

해 양 수 산 부

시 정 요 구

제 목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담보제공 관리 소홀

기 관 명 강서구

내 용

강서구는 수산물의 신속한 처리·저장과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식품 공급체
계 구축 및 국내 수산물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【표 1】 과 같이 ‘○○○
○○○○○○ ○○사업’(국비 30%, 지방비 30%, 자담 40%)을 추진하여 현재 사
업을 완료하고 운영 중에 있다.

【표 1】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 현황

사업자	사업비(백만원)				사업기간
	계	국비	지방비	자담	
○○ ○○○○○○○(주) (대표 ○○○)	6,967	1,900	1,900	3,167	‘13. 3. 27.~’15. 1. 30.

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5조, 「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
한 관리규정」 제26조 및 해양수산부의 보조금 교부결정서의 규정에 따르면 시
설을 설치한 보조사업자 또는 이를 유지·운영하는 자는 당초 목적인 용도 외 사
용, 시설의 중요한 변경, 시설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
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각·양도·교환·임대·폐기 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의 처분

승인권자에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.

따라서 강서구는 보조사업자가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인 수산물산지 가공시설에 대하여 금융기관 등에 담보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승인권자인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.

강서구는 【표 2】와 같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자산에 대하여 공사과정에서 해양수산부로부터 승인 받은 4,800백만원(토지 포함)의 담보 제공 이외 준공검사 후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(국비 및 지방비)에 해당하는 금액인 3,800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, 보조사업자인 ○○ ○○○○○○○(주)(대표 ○○○)가 부산광역시장의 승인 없이 금융기관에 1,200백만원의 담보를 제공하여 국고보조금 지원 시설물을 운용하고 있으나 근저당권 설정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지원 시설물에 대한 재산처분 제한업무를 소홀히 하였다.

【표 2】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근저당 설정 현황

보조사업자 (채무자)	근저당 설정 현황			
	대상	채권자	설정일	채권액(백만원)
계				9,800
○○ ○○○○○○○○(주) (대표 ○○○)	토지, 건물	○○은행	2014.11.13.	4,800
		○○구청	2014.11.17.	3,800
		○○은행	2015. 8.31.	1,200

조치할 사항 강서구청장은

[시정] 승인권자인 부산광역시장의 승인 없이 금융기관에 담보를 제공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 근저당권 설정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.